

금빛사랑데이케어센터

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제1조 (계약목적 등)

- ① 계약목적 : 금빛사랑데이케어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족 및 친인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- ② 계약서는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전자서명으로 제공하고, 시설에서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1. 계약목적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임금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임금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임금을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임금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.

< 본인부담금 비율 >

구분	재가급여 본인부담금
일 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* 기타 의료수급권자 * 차상위 의료임금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 난치성, 만성질환자) * 저소득층 (일부분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감경 6%, 9% 의료 7.5%, 의료 6%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

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뒤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- ④ 「장기요양임금 제공기준 및 임금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임금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임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또는 방문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임금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5.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권리)

- ① 보호자가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-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 - 3.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 - 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 - 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8. 이용자의 임금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 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임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, 경제적 활동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